

임직원 행동강령

고려제강 그룹

[임직원 행동강령]

■ 개요

회사의 고객, 주주, 경쟁사, 협력업체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관계를 규정한다.

■ 목적

회사 임직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신뢰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목적으로 한다.

■ 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그 외 회사와 거래하는 제 3 자에게도 윤리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책임 및 권한

[임직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윤리운영담당]

윤리운영담당은 감사실이며, 회사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 및 실천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지도, 통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관리담당]

윤리관리담당은 인사팀이며, 본 규정을 제개정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업무절차 주요사항

1. 윤리원칙

- 1)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2) 업무수행과 거래관계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지킨다.
- 3) 고객과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출신지역, 학벌, 연령,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및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4)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회사는 개인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 6) 회사는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며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8) 회사와 임직원들은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계열사, 외주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 (그 소속 임직원 포함)

2. 고객에 대한 윤리

1) 고객 존중

- (1) 고객은 회사의 존립 기반이자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2) 임직원들은 글로벌 문화를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 (3)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 또는 구매 강요 행위를 배격함으로써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2) 고객에 대한 신뢰

- (1)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와 제안에 부응토록 노력한다.
- (2)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방법 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3) 고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 조치한다.

3.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1)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건전한 이익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투자로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경영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공개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 (1)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경영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2) 회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1) 회사는 지속적인 내부통제활동을 통해 부정과 불합리를 제거한다.
- (2) 회사의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내부통제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보고는 국제기준, 국가기준 및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는다.
- (3)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개인, 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급적 삼가하며, 불법적인 허위,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않는다.
- (4)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4. 경쟁사 및 협력사에 대한 윤리

1)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

- (1) 회사는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하게 경쟁한다.
- (2)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에 관한 담합을 하지 않으며 담합을 목적으로 가격, 입찰, 고객, 판매지역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는다.
- (3) 경쟁사의 기밀을 상호합의 없는 절차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으며,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경영에 활용한다.

2)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 (1) 회사는 협력사에게 공평한 기회와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상호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고, 존중과 신뢰함으로써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한다.
- (2)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모든 협력사는 [윤리규정]에 따라 인권, 아동 및 강제 노동, 근로시간, 차별, 환경에 대한 국제 표준과 현지 법률을 따른다.
- (4)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확대 시킴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5)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는 업무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5. 사회에 대한 윤리

1) 인권의 존중과 실사의무 (Due Diligence)

- (1)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2)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3)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및 의사소통 한다.

2)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 (1)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국내외 모든 사업장 및 협력사는 연령검사 등 엄격한 고용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2) 아동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도 용인되지 않는다.
- (3)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협력사 내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근로를 보장한다.

3) 부정부패 방지

-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 제반 법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국제상거래뇌물방지 협약 등)를 준수한다.
- (2) 회사는 국내외 해당지역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금품, 향응의 수수 및 지분을 제공받거나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폐해를 끼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모든 임직원은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의, 약속, 승인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 (5) 각 국가의 대정부 활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공무원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 (6)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수주 경쟁 시에는 관련된 모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진행한다.

4) 지역사회 기여

- (1) 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회사는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 (3) 회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등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4) 투자국가의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 해외투자 활동을 통해 현지국가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임직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 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장기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5) 환경경영체계

- (1)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해외협력사, 해외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회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환경 이슈에 대해 [환경관리규정]을 수립해 준수한다.
- (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3)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4)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5) 협력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6) 분쟁광물* 관리

- (1) 회사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공화국을 비롯 인근 국가, 즉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3TG :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 회사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제조 시 사용이 불가피한 분쟁광물에 대하여 원산지 및 공급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OECD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가이드"를 토대로 분쟁광물 공급망을 관리한다.
- (3) 회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윤리적으로 채굴된 광물이 제품에 포함되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분쟁광물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 분쟁광물 : 콩고공화국, 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등 중앙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광물로, 분쟁지역 광산을 반군 무장세력이 소유, 관리함에 따라 광물 판매 자금이 반군의 수익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노동, 성폭행, 살인 등 인권 유린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지되어 미국과 EU 등에서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규제하고 사용 여부를 공시화 함.

6. 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

1) 조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규범

-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 (2)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의 경영이념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회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4) 모든 임직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업무상 취득한 고객 및 기업정보는 업무상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 (5) 모든 임직원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 고양

- (1)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인식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2)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 포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괴롭힘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애로사항 등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갖춘다.
- (4) 회사는 국가별 근로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최저임금 보장,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조건을 결정하고,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한다.
- (5)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임직원에게 유연한 업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지원하여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6)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우수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3) 자산 보호 및 관리

- (1) 회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임직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등의 모든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 (2) 물리적 자산, 금융 자산, 지식 자산, 인적 자산, 통신 시스템, 비품, 법인카드, 소모품 및 장비 등을 포함한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경영진이 승인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자산 및 시설의 절도, 손상, 무단 점유나 무단 사용, 친구나 가족 등 외부인이 회사 자산과 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3) 임직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 중 알게 된 회사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4)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여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5) 회사의 자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6) 경비집행은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고객, 임직원, 회사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터넷 사용시 바이러스 유입 또는 IT 보안 위반 등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사용은 금지한다.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 수익 및 기타 재무자료, 사업 계획, 현재 및 장래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 객체 또는 소스 코드 양식의 소프트웨어, 중역과 조직변화를 포함한 인사 정보

4)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승진, 보상 및 징계를 비롯한 인사관행에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나이,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회적 신분, 장애, 임신, 군 복무 여부, 유전적 정보, 정치적 성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 또한,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3)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임직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5)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과 지역사회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임직원의 안전, 건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국제기준 및 관계 법령 등 관련규정과 근무장소의 청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한다.
- (3) 안전규정 준수 및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4) 회사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잠재적 위험요인(감전, 화재, 추락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장 설계, 작업 수행 절차 수립, 개인 보호장비 제공,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화재, 악천후, 화학물질 누출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와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면밀히 평가 및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관리한다.

7. 윤리규정의 관리와 운영

1) 윤리규정 담당 조직

- (1) 윤리관리담당(인사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규정의 제·개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윤리운영담당(감사실)은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통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2) 윤리규정 운영정책

- (1) 회사와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상벌관리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 (2) 회사 및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운영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윤리운영담당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고,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3) 직무 수행내용이 상기 윤리규정상 위반 등 적용유무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윤리관리담당 또는 윤리운영담당에게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 및 처리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6)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며 이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3) 리스크 관리

- (1) 불확실한 경영환경 전반에서 회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
- (2) 임직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 및 최소화 한다.
- (3)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윤리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각 사업장 내 게시판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8. 관련 사규

- 1) 경영기획관리규정
- 2) 성과관리규정
- 3) 홍보관리규정
- 4) 사규관리규정
- 5) 감사규정
- 6) 복무규정
- 7) 취업규정
- 8) 교육관리규정
- 9) 평가승진규정
- 10) 상벌관리규정
- 11) 내부회계관리규정
- 12) 안전관리규정
- 13) 보건관리규정
- 14) 환경관리규정